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4호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 9 3 7 호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의 회 사 무 국	3
○ 조	례 제 1 9 3 8 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7
○ 조	례 제 1 9 3 9 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전 총 괄 과	10
○ 조	례 제 1 9 4 0 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총 무 과	13
○ 조	례 제 1 9 4 1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23
○ 조	례 제 1 9 4 2 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26
○ 조	례 제 1 9 4 3 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29
○ 조	례 제 1 9 4 4 호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여 성 가 족 과	31
○ 조	례 제 1 9 4 5 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 동 복 지 과	38
○ 조	례 제 1 9 4 6 호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보 건 행 정 과	41
○ 조	례 제 1 9 4 7 호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건 강 증 진 과	45

훈 령

○ 훈	령 제 4 0 2 호 남동구 공무원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	안 전 총 괄 과	51
○ 훈	령 제 4 0 3 호 남동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안 전 총 괄 과	53

공 고

○ 공	고 제 2 3 0 6 호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환 경 보 전 과	79
○ 공	고 제 2 3 0 7 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환 경 보 전 과	97
○ 공	고 제 2 3 0 8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토 지 정 보 과	105
○ 공	고 제 2 3 1 4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107
○ 공	고 제 2 3 2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09
○ 공	고 제 2 3 3 3 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세 무 1 과	110

고 시

○ 고	시 제 1 4 5 호 2023년도 예산 고시	기 획 예 산 과	112
○ 고	시 제 1 4 6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19

○ 고	시 제 1 4 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217-3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21
○ 고	시 제 1 4 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409-33번지 일원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27
○ 고	시 제 1 4 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33
○ 고	시 제 1 5 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159-2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40
○ 고	시 제 1 5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177-4번지 일원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43
○ 고	시 제 1 5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522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47
○ 고	시 제 1 5 3 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생 활 경 제 과 150
○ 고	시 제 1 5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52
○ 고	시 제 1 5 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중로3-6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156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37호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3항을 삭제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임용 및 배치 (안 제3조)
-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4조)
-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
- 교육훈련 (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38호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규모”를 “대규모 행사로,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라. 구 관련 부서 또는 각 동에서 행정동향 보고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옥외행사”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의 안전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관리) ① 동장은 관내에서 열리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파악된 경우 신속하게 동향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 및 행사관련 부서에 주요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준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사관련 담당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옥외행사 적용범위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까지 확대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외행사의 정의 조항에 각 동에서 행정동향 파악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39호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지원범위 (안 제3조, 제4조)
- 재정지원 등,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의 반환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0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남동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남동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남동구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남동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남동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안 제11조 ~ 제2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1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예술감독 1명,”을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지휘자 및 반주자는”을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휘자”를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시”로 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반주자는”을 “반주자, 훈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29조제2항 중 “반주자”를 “반주자, 훈련장”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립예술단 단원의 구성과 위,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 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풍물단)에 직책을 신설하여 예술단 단원의 기량을 증진하고자 함
- 구립예술단의 위탁관리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풍물단 구성에 훈련장 직책 추가 : (안 제24조제3항)
- 안 제24조제3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안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4항, 제28조제1호, 제29조제2항)
- 훈련장의 직무 신설 : (안 제26조)
- 구립예술단 단원의 해촉 기준 명료화 : (안 제28조)
- 구립예술단 위탁관리 조항 보완 : (안 제3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2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6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6항”을 “법 제4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발표회 등을 개최 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사무국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구 수정(안 제1조)
- 자구 수정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상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자구 수정(안 제8조)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의 구체적 규정 마련(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3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시행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정부 사업 대상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되어 존치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제정 2020.09.25. 조례 제1721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4호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일		
지원대상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 청 인				
신 청 내 역				
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 행 사 항 및 결 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비밀준수 등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안 제10조 ~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5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을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아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아동”을 “아동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등 사유”를 “등의 사유”로,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을 “미약한 가구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를 “담임교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선정결과 등를”을 “선정결과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1.12.21. 시행)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2.06.21. 시행)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개정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명료화(안 제2조, 안 제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6호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남동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안 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조례 제1947호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청인)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성별
	산후조리원명			
	소재지			출생일자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대상자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원			
소 재 지		전화번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제 금액	(원)		

상기인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후조리원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안 제4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안 제5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안 제6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방법 (안 제7조)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제한 등 (안 제8조)

훈 령

남동구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훈령 제402호

남동구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훈령

남동구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전면개정하는 「남동구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남동구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훈 령

남동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2년 12월 22일

남동구 훈령 제403호

남동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남동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남동구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남동구 소속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안전관리”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7. “사업장”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장 작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9. “관리감독자”란 작업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남동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동장, 사업소장을 말한다.
10.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7.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8.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근무형태(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 평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10. 그 밖에 남동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구청장은 작업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임명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사업장 정리·정돈·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관리자) ① 구청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안전 관련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① 구청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사업장 내 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6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성이 있는 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대표(구청장 또는 관리책임자)

2. 안전총괄 부서장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구청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선임 시까지 안전총괄 부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인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인 경우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권한위임) ①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대표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다.

③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심의·의결사항의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및 회의 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회의소집) ① 제18조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정은 노사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노사 쌍방의 협의 하에 개최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보좌 하에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채용 시 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직무교육

② 제1항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3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되며 방호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영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주기 및 합격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24조와 제126조에 따른다.

제25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환경 및 작업공정, 근무행태 상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게시 등)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며, 그 용도, 설치·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제28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사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29조(작업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사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리책임자 및 안전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점검 실시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여부 확인
4.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협조
6. 작업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7. 사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8.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9.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10. 작업환경측정 실시
11. 그 밖에 수급인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1조(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건강진단: 연 1회
2. 특수건강진단: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다.

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배치 전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중 유해인자에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근로자로서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가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임시건강진단: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때
- ③ 건강진단 항목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다.

제32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를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유해물질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특별관리물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보호구 지급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금지되었다가 다시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① 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라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한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해요인조사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 따른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9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① 재해발생 시 관계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에 대한 응급구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 인지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관리책임자 및 안전총괄부서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재해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

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으로 안전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41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의 조치(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취해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한다.

제42조(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포상)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 우수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4조(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 법 제164조에 따라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린다.

제46조(위임) 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무재해운동 추진)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

제48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안전총괄.부서 중대재해예방팀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업 근로자 대상)

【관리감독자】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동장, 사업소장

【남동구 소속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별지 제1호서식]

20 년 분기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회의구분	20 년도 /4분기 (☐ 정 기 ☐ 임 시) 회 의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 사용자위원 : - 근로자위원 :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그 밖의 토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특별관리물질취급일지	결	당	당			
	재					

사업장명 :

취급일자	물질명	취급량	작업내용	착용보호구	취급자	관리감독자

(보완사항)

취급일자	조치내용

※ 취급일지 작성 시 취급상의 문제점,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내역 등을 기록

[별지 제3호서식]

보 호 구 지 급 대 장

■ 소속명 :

[illegible]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공사현장 명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 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사망			
III. 재해 발생 개 요 및 원인	⑱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⑳재발 방지 계획						

※ ㉔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
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
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
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
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공정 □□□

기인물

□□□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가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장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 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 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무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열압, 뇌출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기관·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를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서

사고개요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 일	
		성 별	☐ 남 ☐ 녀	계약형 태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 공공근로 ☐ 기타() 계약기간 (~)
		재해정도	☐ 사망 ☐ 부상 ☐ 직업성 질병 (치료예상기간: 일)		
사고원인 및 작업상황	-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 기재 - 사고 발생 당시의 작업상황을 상세히 기술				
조치사항	- 응급복구 사항, 언론 모니터링 등				
향후계획	- 복구, 피해자 지원, 향후 대책 등				
기타 중요사항	-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 경찰서 조사관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작성 방법 >

1. 사고개요

- 사건 발생 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간), 분] 및 장소 기재
- 발생 형태
 - ①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②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③ 깔림(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④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⑤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⑥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⑦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⑧ 절단, 베임, 찢림
 - ⑨ 감전(인체가 전선 등에 접촉하여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낌)
 - ⑩ 화재·폭발(주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침)
 - ⑪ 기타 유형()
- 사고원인 및 작업상황
 -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를 기술함
 - 안전작업 수칙 미준수, 설계 미흡 및 운전자의 운전 절차 미숙지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함
 - 사고 시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장치의 불량상태 및 고장 또는 점검·수리 등과 같은 사고 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 시점부터 사고가 수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중대시민재해 발생보고서

사고개요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공중이용 시설 구분	☐ 청사 등 업무시설 ☐ 복합용도건축물 ☐ 어린이집 ☐ 옹벽 및 절토사면 ☐ 도로터널 ☐ 도로교량 ☐ 기타()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 일	
성 별		☐ 남 ☐ 녀	재해정 도	☐ 사망 ☐ 부상 ☐ 기타()	
사고경위	-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 기재 -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				
조치사항	- 긴급구호조치, 언론 모니터링, 유관기관 신고 등				
향후계획	- 추가피해방지대책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기타 중요사항	-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여부, 안전점검 수행 및 유지관리 내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중대시민재해 발생 보고서 작성 방법 >

1. 사고개요

- 사건 발생 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간), 분] 및 장소 기재
- 발생 형태
 - ①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②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③ 깔림(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④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⑤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⑥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⑦ 끼임(물체와 물체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임으로 인해 다침)
 - ⑧ 감전(인체가 전선 등에 접촉하여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낌)
 - ⑨ 화재·폭발(주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침)
 - ⑩ 기타 유형()
- 공중이용시설 구분
 - ① 청사 등 업무시설
 - ② 복합용도건축물
 - ③ 어린이집
 - ④ 옹벽 및 절토사면
 - ⑤ 도로터널
 - ⑥ 도로교량
 - ⑦ 기타

2. 사고경위

-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을 기술함
- 안전 수칙 미준수, 설계 미흡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함
- 사고 발생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22.8.18.시행)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27.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남동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여 남동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남동구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추가(안 제3장)
 - 「남동구 공무원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과 통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사항 반영
 -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내용 보완(안 제5장 및 제6장)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규정 추가(안 제7장)
 -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8장)
- 별지서식 제정(안 별표, 안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06호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목적 및 기본원칙 (안 제1조 ~ 제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제10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안 제11조)
- 기타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
- 연 락 처 : 전화 453-2602 FAX 453-2609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첨부자료 :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구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구민의 의견이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선출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의 국장·실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전에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 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목적 및 기본원칙 : (안 제1조 ~ 제2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4조 ~ 제10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 (안 제11조)
- 기타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9조, 제11조, 제14조~제16조, 제20조, 제2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구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구민의 의견이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선출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의 국장·실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전에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 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 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202-2307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정비
(안 제2조 ~ 제6조, 제8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

○ 연 락 처 : 전화 453-2602 FAX 453-2609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참고자료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존속이 필요하나 안전 발생빈도가 낮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정비
(안 제2조 ~ 제6조, 제8조,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 및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8조 ----- ----- ----- ----- -----.
제2조(기능)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제2조(기능) ----- ----- -----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구민참여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각각 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행정분과위원회, 구민참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분과위원회: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이행점검 등

2. 구민참여분과위원회: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보호 관련 사업 활동, 환경교육, 환경관련 홍보활동 등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 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8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항목: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환경관련 사업비 등
2. 지원방법: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08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 구 구월동 341-12번지 일원에서 시행된 『우정아파트 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2. 12. 19.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우정아파트 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우정아파트 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토지소재지	종전 지적공부(폐쇄)		확정 지적공부(시행)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남동구 구월동	2	3,471	1	3,472.9	지번조서 별첨

4. 공고기간 : 2022. 12. 19. ~ 2023. 1. 3. (15일간)
5. 시 행 일 : 2022. 12. 19.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1139-7 외23필지 복합개발사업 종전토지 지번별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명	등록번호	주소
1	구월동	341-12	대	3,446.0	우정아파트 1동2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	120171- 002809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65번길 8 (구월동, 우정아파트)
2	구월동	343-8	대	25.0	우정아파트 1동2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	120171- 002809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65번길 8 (구월동, 우정아파트)
합계	2필지			3,471.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1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12. 19.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22. 12. 19. ~ 2023. 1. 2.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휴게음식점	1993-0199327	LG25소래점	유**	남동구 포구로 17(논현동)	-
휴게음식점	1997-0199405	역전다방	김**	남동구 청능대로289번길 72(고잔동)	-
휴게음식점	1991-0199199	성희다방	조**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61(구월동)	-
휴게음식점	1991-0199145	이솝다방	편**	남동구 인주대로 560(구월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남동구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식품허가팀 032-453-2621)
 - 청문일시 : 2023. 1. 13.(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식품허가팀 032-453-2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2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1. 4.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2. 20. ~ 2023. 1. 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휴 게 음식점	2015- 0200050	문화다방	이**	남동구 문화로 101, 2층(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31	2023-01-04
휴 게 음식점	2017- 0200219	로웰PC카페	홍**	남동구 호구포로 214, 3층 302호(논현동, 대진메디컬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0-30	2023-01-04
휴 게 음식점	2010- 0199008	카페 리아이올라	윤**	남동구 백범로248번길 27, (간석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8-09	2023-01-0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1. 3.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2. 12. 20.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2333호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결을 얻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용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5호

2023년도 예산 고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12.19.)에서 의결,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남동구청장

2023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88,783,270	100.00%	1,008,146,198	100.00%	80,637,072	8.00%
일반회계		1,072,375,834	98.49%	989,720,118	98.17%	82,655,716	8.35%
특별회계		16,407,436	1.51%	18,426,080	1.83%	△2,018,644	△10.96%
기타특별회계		16,407,436	1.51%	18,426,080	1.83%	△2,018,644	△10.9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43,100	0.13%	1,737,426	0.17%	△294,326	△16.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8,900	0.00%	18,200	0.00%	700	3.85%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496,436	0.05%	302,454	0.03%	193,982	64.14%
	주차장특별회계	14,185,400	1.30%	16,096,000	1.60%	△1,910,600	△11.8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63,600	0.02%	272,000	0.03%	△8,400	△3.09%

세 입 총 괄 표

2023년도 일반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72,375,834	100.00%	989,720,118	100.00%	82,655,716	8.35%
100	지방세 수입	157,578,252	14.69%	148,530,813	15.01%	9,047,439	6.09%
110	지방세	157,578,252	14.69%	148,530,813	15.01%	9,047,439	6.09%
200	세외수입	52,275,042	4.87%	52,947,370	5.35%	△672,328	△1.27%
210	경상적세외수입	43,118,942	4.02%	43,728,789	4.42%	△609,847	△1.39%
220	임시적세외수입	6,162,905	0.57%	6,029,709	0.61%	133,196	2.21%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93,195	0.28%	3,188,872	0.32%	△195,677	△6.14%
300	지방교부세	25,700,000	2.40%	33,267,000	3.36%	△7,567,000	△22.75%
310	지방교부세	25,700,000	2.40%	33,267,000	3.36%	△7,567,000	△22.75%
400	조정교부금등	99,117,784	9.24%	91,457,349	9.24%	7,660,435	8.38%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99,117,784	9.24%	91,457,349	9.24%	7,660,435	8.38%
500	보조금	684,476,576	63.83%	621,517,586	62.80%	62,958,990	10.13%
510	국고보조금등	515,645,795	48.08%	443,739,720	44.83%	71,906,075	16.20%
520	시·도비보조금등	168,830,781	15.74%	177,777,866	17.96%	△8,947,085	△5.0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228,180	4.96%	42,000,000	4.24%	11,228,180	26.73%
710	보전수입등	53,025,000	4.94%	41,000,000	4.14%	12,025,000	29.33%
720	내부거래	203,180	0.02%	1,000,000	0.10%	△796,820	△79.68%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72,375,834	100.00 %	989,720,118	100.00 %	82,655,716	8.35 %
010 일반공공행정	52,796,030	4.92 %	50,351,387	5.09 %	2,444,643	4.86 %
020 공공질서및안전	5,461,237	0.51 %	13,891,360	1.40 %	△8,430,123	△60.69 %
050 교육	13,742,395	1.28 %	12,950,331	1.31 %	792,064	6.12 %
060 문화및관광	14,664,226	1.37 %	14,171,797	1.43 %	492,429	3.47 %
070 환경	44,798,571	4.18 %	44,643,159	4.51 %	155,412	0.35 %
080 사회복지	721,752,972	67.30 %	646,971,161	65.37 %	74,781,811	11.56 %
090 보건	25,357,780	2.36 %	31,150,158	3.15 %	△5,792,378	△18.60 %
100 농림해양수산	4,426,515	0.41 %	3,277,486	0.33 %	1,149,029	35.06 %
110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7,190,005	0.67 %	4,910,146	0.50 %	2,279,859	46.43 %
120 교통및물류	14,163,759	1.32 %	15,428,867	1.56 %	△1,265,108	△8.2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7,399,466	3.49 %	36,846,955	3.72 %	552,511	1.50 %
160 예비비	8,148,053	0.76 %	1,403,355	0.14 %	6,744,698	480.61 %
900 기타	122,474,825	11.42 %	113,723,956	11.49 %	8,750,869	7.69 %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72,375,834	100.00%	989,720,118	100.00%	82,655,716	8.35%
100 인건비	97,870,358	9.13%	92,658,120	9.36%	5,212,238	5.63%
200 물건비	38,652,103	3.60%	37,313,308	3.77%	1,338,795	3.59%
300 경상이전	854,195,913	79.65%	775,266,202	78.33%	78,929,711	10.18%
400 자본지출	60,714,762	5.66%	75,701,680	7.65%	△14,986,918	△19.80%
600 보전재원	56,250	0.01%	0	0.00%	56,250	순증
700 내부거래	1,384,510	0.13%	1,367,153	0.14%	17,357	1.27%
800 예비비및기타	19,501,938	1.82%	7,413,655	0.75%	12,088,283	163.05%

세 입 총 괄 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전체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6,407,436	100.00%	18,426,080	100.00%	△2,018,644	△10.96%
200 세외수입		9,143,904	55.73%	7,871,508	42.72%	1,272,396	16.16%
	210 경상적세외수입	4,338,504	26.44%	3,286,508	17.84%	1,051,996	32.01%
	220 임시적세외수입	980,400	5.98%	1,265,000	6.87%	△284,600	△22.5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25,000	23.31%	3,320,000	18.02%	505,000	15.21%
500 보조금		1,492,700	9.10%	4,922,190	26.71%	△3,429,490	△69.67%
	510 국고보조금등	1,117,740	6.81%	2,856,392	15.50%	△1,738,652	△60.87%
	520 시·도비보조금등	374,960	2.29%	2,065,798	11.21%	△1,690,838	△81.8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70,832	35.17%	5,632,382	30.57%	138,450	2.46%
	710 보전수입등	5,581,782	34.02%	5,395,985	29.28%	185,797	3.44%
	720 내부거래	189,050	1.15%	236,397	1.28%	△47,347	△20.03%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6,407,436	100.00 %	18,426,080	100.00 %	△2,018,644	△10.96 %
010 일반공공행정	53,300	0.32 %	53,300	0.29 %	0	0.00 %
070 환경	496,436	3.03 %	302,454	1.64 %	193,982	64.14 %
080 사회복지	1,389,800	8.47 %	1,431,800	7.77 %	△42,000	△2.93 %
120 교통및물류	12,646,125	77.08 %	14,510,662	78.75 %	△1,864,537	△12.85 %
140 국토및지역개발	282,500	1.72 %	290,200	1.57 %	△7,700	△2.65 %
900 기타	1,539,275	9.38 %	1,837,664	9.97 %	△298,389	△16.24 %

세 출 총 괄 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6,407,436	100.00%	18,426,080	100.00%	△2,018,644	△10.96%
100 인건비	1,501,507	9.15%	1,848,629	10.03%	△347,122	△18.78%
200 물건비	1,067,570	6.51%	868,841	4.72%	198,729	22.87%
300 경상이전	4,502,447	27.44%	4,143,014	22.48%	359,433	8.68%
400 자본지출	1,845,000	11.24%	6,325,320	34.33%	△4,480,320	△70.83%
800 예비비및기타	7,187,516	43.81%	5,240,276	28.44%	1,947,240	37.16%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805, 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8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새남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주차장 면적 $A=14,300\text{m}^2$ [부대시설(공중화장실) 신축 연면적 $A=20\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 변경: 실시계획 고시일 ~ 2023.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이 번 번호	소재지 (남촌동)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57-1	차	5,358	5,358	남동구청				
2	363-2	전	4	4	국토부				
3	366-2	도	15,647	2,102	국토부				
4	476-1	도	44,023	628	국토부				
5	480-1	차	1,915	1,915	남동구청				
6	482-1	차	3,210	3,210	남동구청				
7	493-1	도	5,708	382	국토부				
8	494-11	도	475	224	국토부				
9	598-2	도	1,314	13	국토부				
10	598-43	도	241	241	국토부				
11	598-57	도	2,968	223	국토부				
소 계			14,300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217-3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217-3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217-3번지 일원 소로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218m, B=10m, A=2,377.1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6.18. ~ 2022.12.31.
- 변경: 2020.06.18.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소로1-5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계 (㎡)	잔여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219-6	차	662	21		21	641	재단법인 ○○재단	인천시 중구 답동 ○○○				
2	고잔동	217-6	묘	592	469		469	123	이○○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99-2 푸른마 을한신아파트 ○○○	○○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1가,부천금융센터)	근저당권	
3	고잔동	216-2	전	301	293		293	8	이○○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99-2 푸른마 을한신아파트 ○○○	○○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1가,부천금융센터)	근저당권	
4	고잔동	216	장	1,596		3	3	1,593	이○○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99-2 푸른마 을한신아파트 ○○○	○○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1가,부천금융센터)	근저당권	
5	고잔동	215	전	949	304	7	311	638	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세 라믹아파트 ○○○	남동○○ 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6	고잔동	307-2	답	730	73		73	657	박○○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로 15번길 21, ○○○(남촌동, 풍림아파트)	남동○○ 조합	인천시 남동구 장승로 ○○○ (만수동,논현지점)	근저당권	
7	고잔동	307-6	전	992	135		135	857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8	고잔동	308	장	882		14	14	869	이○○	인천시 연수구 계림로 111 ○○○ (청학동, 현대아파트)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9	고잔동	308-14	장	752		9	9	743	이○○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33 ○ ○○ (송도동,송도해모로아파트)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 ○○ (태평로2가,○○○)	근저당권	
10	고잔동	308-3	전	318	318		318	0	이○○ 외 2인	인천시 연수구 계림로 111 ○○○ (청학동, 현대아파트)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9길 ○ ○○ (태평로2가,○○○)	근저당권	
11	고잔동	308-15	장	752		6	6	746	주식회사 ○○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고잔동)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송도지점)	근저당권	
12	고잔동	307-9	전	1,732	212		212	1,520	백○○ 외 1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신시 가지아파트 ○○○				
13	고잔동	309-1	장	184	184		184	0	서○○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61 ○○○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2가,남동중앙지점)	근저당권	

14	고잔동	307-12	답	387	14		14	373	백○○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15	고잔동	308-16	장	1,698		10	10	1,688	서○○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61 ○○○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2가,남동중앙지점)	근저당권	
16	고잔동	306-3	답	656		11	11	646	안○○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 ○ (구월동)	서인천 ○○조합	인천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청라동,서인천농협)	근저당권	
17	고잔동	306-13	답	51	51		51	0	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남인천 ○○조합	인천시 남구 용현동 ○○○	근저당권	
18	고잔동	306-14	답	170	170		170	0	오○○	인천시 연수구 635 연수1차우성 아파트 ○○○				
19	고잔동	306-15	답	32		9	9	23	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86-1 이삭 아파트 ○○○				
20	고잔동	306-9	도	1,991	68		68	1,923	남동구	-				
합 계				15,426	2,310	68	2,377	13,049						

지 장 물 건 조 서

연 번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수 량 (개소)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	219-6	웬스	L=22.2 H=1.0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	
2	고잔	219-6	조경수	D=0.15 H=6.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	향나무
3	고잔	307-2	가로등	7M 철주		1	박**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15번길***	7M
4	고잔	308-3	슬러지탱크	D=3.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5	고잔	308-3	창고	무벽건물(천막)	67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6	고잔	308-3	가로수	D=0.4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7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향나무
8	고잔	308-3	가로수	D=0.4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9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향나무

제1734호

남동구 구보

2022. 12. 22. 목요일

10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11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향나무
12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13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향나무
14	고잔	308-3	가로수	D=0.3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15	고잔	308-3	가로수	D=0.2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향나무
16	고잔	308-3	가로수	D=0.3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17	고잔	308-3	웬스	L=32.1 H=2.0	64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18	고잔	308-3	가로수	D=0.15		1	(주)**유업	인천 남구 고잔동 ***	은행나무
19	고잔	307-9	표지판			2	백**외1	인천 남구 고잔동 ***	
20	고잔	307-9	가로등	7M 콘크리트		1	백**외1	인천 남구 고잔동 ***	
21	고잔	307-9	표지판			1	백**외1	인천 남구 고잔동 ***	
22	고잔	307-12	표지석	1.4x0.6x0.5		1	백**	서울 양천구 신정동***	
23	고잔	309-1	한전주			2	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	12M
	고잔	309-1	웬스		28		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	
24	고잔	309-1	공장		9		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	저축면적
	고잔	309-1	기계장치		8		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	
25	고잔	309-1	LPG가스탱크		5		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	
26	고잔	306-14	2층조립식		48		오**	인천 연수구 연수동635 연수1차우성아파트 ***	저축면적
27	고잔	306-13	웬스	L=17.6 H=2	35		안**	인천 남동구 구월동 ***	
28	고잔	306-9	LG통신주			1	LG유플러스		8M
29	고잔	306-9	통신주			1	KT		8M
30	고잔	306-9	한전주	8716H 122		1	남동구		16M
31	고잔	306-9	가로등			1	남동구		
32	고잔	306-9	웬스	L=5.2 H=1.3	7		남동구		
소 계					293	26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09-1	NO.0+183.00	좌측		한국전력	소로1-5호선
2	남동구 고잔동	309-1	NO.0+185.00	좌측		한국전력	소로1-5호선
3	남동구 고잔동	306-9	NO.0+218.00	좌측	8716H 122	한국전력	소로1-5호선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06-9	NO.0+218.00	좌측		LG유플러스	소로1-5호선
2	남동구 고잔동	306-9	NO.0+218.00	좌측		한국통신	소로1-5호선

우 수 맨 홀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수 량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159-2	NO.0+042.00	좌측	1	소로1-5호선
2	남동구 고잔동	162-3	NO.0+116.00	우측	1	소로1-5호선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409-33번지 일원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409-33번지 일원 소로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09-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409-33번지 일원 소로1-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219m, B=10m, A=2,419.7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6.18. ~ 2022.12.31.
- 변경: 2020.06.18.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소로1-7호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계 (㎡)	잔여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 고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 권리	
1	고잔동	379-6	도	4,002	85		85	3,917	남동구	-				
2	고잔동	409-33	도	1	1		1	0	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3	고잔동	409-32	장	714		1	1	713	전**	인천시 남구 승학길 ***	증**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4	고잔동	409-29	도	60	60		60	0	김**	인천시 남구 관교동 ***				
5	고잔동	410-3	도	64	64		64	0	김** 외 1인	인천시 남구 관교동 ***				
6	고잔동	410	장	833		6	6	828	(주)코**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로 ***	신***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 ***	근저당권	
7	논현동	738-13	도	130	130		130	0	남동구	-				
8	고잔동	410-2	답	365	333	13	346	19	기**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9	고잔동	409-38	잡	955		9	9	946	김**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우***	서울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10	고잔동	409-37	전	1,201	297		297	904	김**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우***	서울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11	고잔동	409-39	잡	123		62	62	61	김**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우***	서울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12	고잔동	372-63	잡	156		20	20	136	김**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우***	서울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13	고잔동	372-62	전	206	206		206	0	김**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우***	서울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14	고잔동	372-1	잡	1,416		5	5	1,411	김** 외 1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우***	서울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제1734호

남동구 구보

2022. 12. 22. 목요일

15	고잔동	372-65	전	192	192		192	0	여** 외 4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근저당권	
16	고잔동	372-66	잡	196		18	18	178	여** 외 4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근저당권	
17	고잔동	372-2	잡	1,803		5	5	1,798	여** 외 4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근저당권	
18	고잔동	372-61	답	240	240		240	0	유**	서울시 양천구 목동 ***				
19	고잔동	372-60	잡	199		10	10	189	유**	서울시 양천구 목동 ***				
20	고잔동	372-18	잡	884		5	5	879	유**	서울시 양천구 목동 ***				
21	고잔동	372-51	답	545	545		545	0	유** 외 2인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				
22	고잔동	372-5	잡	477		15	15	462	김** 외 1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				
23	고잔동	372-50	잡	446		9	9	437	김** 외 1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신***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 ***	근저당권 저당권	
24	고잔동	372-11	잡	1,660		3	3	1,657	김** 외 1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신***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 ***	근저당권 저당권	
25	고잔동	372-55	전	234	22		22	212	김** 외 1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신***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 ***	근저당권 저당권	
26	고잔동	586-67	도	1,171	62	2	64	1,107	국(국토교 통부)	-				
합 계					18,273	2,237	183	2,420	15,853					

지 장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수 량 (개소)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	372-11	컨테이너	6.0x2.5x2.5		2.0	김** 외1	경기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	
2	고잔	372-51	컨테이너	6.0x2.5x2.5		17.0	류** 외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3	고잔	372-51	컨테이너	6.0x2.5x2.5		6.0	류** 외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4	고잔	372-65	물류분리대		32.4		여** 외4	인천 남구 고잔동 ***	
5	고잔	372-66	한전주	9622H 084		1.0		한국전력공사	12M
6	고잔	372-65	웬스	L=10.4 H=3.0	31.2		여** 외4	인천 남구 고잔동 ***	
7	고잔	409-37	웬스	L=11.8 H=4.0	47.2		강** 외1	서울 서초구 명달로11길 ***	
8	고잔	409-37	컨테이너	6.0x2.5x2.5		2.0	강** 외1	서울 서초구 명달로11길 ***	
9	고잔	410	출입문	B=7.5 H=3.0	22.5		(주)코카코	인천 남동구 고잔로21번길 ***	
10	고잔	409-37	웬스	L=8.3 H=2.5	20.8		강** 외1	서울 서초구 명달로11길 ***	
11	고잔	410-2	LG통신주	8816C 241		1.0		LG 유플러스	8M
12	고잔	410-2	한전주	8816C 241		1.0		한국전력공사	16M
13	고잔	409-8	계근대	10.0x3.2 철재[50톤용]		1.0	강** 외1	서울 서초구 명달로11길 ***	
14	고잔	738-13	통신주	고잔-207-3		1.0		KT	8M
15	고잔	738-13	목재교량			1.0	(주)**오토텍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16	고잔	738-13	웬스	L=49.2 H=1.4	68.9		(주)**오토텍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17	고잔	409-33	통신주	고잔-207-2		1.0		KT	8M
18	고잔	409-33	한전주	8616C 254		1.0		한국전력공사	16M
소 계					223.0	35.0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409-33	NO.0+003.00	좌측	8616C 254	한국전력	소로1-7호선
2	남동구 고잔동	410-2	NO.0+042.00	좌측	8816C 241	한국전력	소로1-7호선
3	남동구 고잔동	372-66	NO.0+135.00	좌측	9622H 084	한국전력	소로1-7호선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409-33	NO.0+003.50	좌측		한국통신	소로1-7호선
2	남동구 고잔동	738-13	NO.0+020.00	좌측		한국통신	소로1-7호선
3	남동구 고잔동	410-2	NO.0+042.50	좌측		LG유플러스	소로1-7호선

우 수 맨 홀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수 량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179-6	NO.0+002.00	좌측	1	소로1-7호선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1-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230.0m, B=10.0m, A=2,986.7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당초: 남동구청장(건설과)
- 변경: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9.12.27. ~ 2022.12.31.

○ 변경: 2019.12.27.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용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도로내	도로외	소계	잔여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372-26	답	64	64		64	0	남동구					
2	"	372-27	도	51	51		51	0	남동구					
3	"	372-28	답	61	61		61	0	삼**	남동구 고잔동 *** **				
4	"	372-24	장	576			0		한**	서울 양천구 목동*** **				
			장	569		21	21	548		"				
4-1	"	372-67	장	7	7		7	0	남동구					372-24에서 분할
5	"	372-13	답	1,210			0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0		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잡	845		126	126	719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0		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임****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	근저당권 저당권	
5-1	"	372-57	답	336	336		336	0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372-13에서 분할
									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임****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	근저당권 저당권	
5-2		372-58	답	1	1		1	0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372-13에서 분할
									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임****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	근저당권 저당권	
5-3	"	372-56	잡	28		17	17	11	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				372-13에서 분할
									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	임****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	근저당권 저당권	
6	"	372-10	장	1,467		8	8	1,459	삼**	남동구 고잔동 *** **	씨***	본*	근저당권	
7	"	379-5	전	1,157			0	1,055	민**	남동구 고잔동 *** **				
									신**	남동구 고잔동 *** **				
			잡	1,093		38	38	1,055						

7-1	"	379-25	전	64	64		64	0	남동구					379-5에서 분할
8	"	379-4	전	2,182					강**	남동구 논고개로*** **	인***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저당권	
			잡	1,072		85	85	987						
8-1	"	379-24	전	886	886		886	886	강**	남동구 논고개로*** **	인***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저당권	379-4에서 분할
8-2	"	379-28	전	3		3	3	0	강**	남동구 논고개로*** **	인***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저당권	379-4에서 분할
8-3	"	379-22	잡	122		51	51	71	강**	남동구 논고개로*** **	인***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저당권	379-4에서 분할
9	"	372-68	답	8	8		8	0	남동구					372-38에서 분할
10	"	372-16	장	1,936		4	4	1,930	김** 오**	남동구 고잔로 *** ** 남동구 고잔로 *** **				
11	"	372-7	전	1,854			0		오**	남동구 고잔동 *** **				
			잡	294		8	8	286	조**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				
11-1	"	372-69	전	101	101		101	0	이**	남동구 논현고잔로*** **	국	남인천세무서	근저당권	372-7에서 분할
11-2	"	372-53	전	692	692		692	0	이**	남동구 논현고잔로*** **	국	남인천세무서	근저당권	372-7에서 분할
11-3	"	372-52	잡	430		68	68	362	이**	남동구 논현고잔로*** **				372-7에서 분할
11-4	"	372-59	잡	337		14	14	323	김** 황**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신***	서울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저 당권	372-7에서 분할
12	"	372-11	전	1,950					송**	남동구 장도로 *** **				
			잡	1,660		6	6	1,654	김** 황**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신***	서울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저 당권	
12-1	"	372-54	전	56		27	27	29	김** 황**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신***	서울 중구 세종대로 ***	근저당권 저 당권	372-11에서 분할

12-2	"	372-55	전	234	212		212	22	김** 황**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신***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근저당권 저당권	372-11에서 분할
13	"	586-67	도	1,171	28		28	1,143	건설부	국				
소 계					22,517	2,511	476	2,987	12,540					

■ 지장물조사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고잔동	372-26 372-27	포장	120.4㎡	식	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	한**	
			선별장	스레트 B=1.2 L=3.5	㎡	4.2			
			웬스	철재 L=10.0 H=1.1	㎡	11			
2	고잔동	372-10	출입문	철재 B=3.0 H=1.9	㎡	5.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가스공업(주)	
			웬스	메쉬웬스 L=5 H=1.9	㎡	9.5			
			웬스	EGI L=5 H=1.8	㎡	9			
			CCTV		개소	3			
			수도계량기		개소	1			
			적외선감지기		개소	3			
			포장	55.3㎡	식	1			
3	고잔동	372-57	출입문	EGI웬스 B=8.0 H=6.0	㎡	48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최**	
			담장	EGI웬스 H=3.0 L=70.0	㎡	210			
			계근대	철재[50톤 用] B=3.1 L=10.0	개소	1			
			사무실	컨테이너	개소	2			

제1734호

남동구 구보

2022. 12. 22. 목요일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개소	1			
			CCTV		개소	5			
			구조물	철재, 고철분리수거대	식	1			
			컨테이너 바닥기초	콘크리트	식	2			
			포장	272.7㎡	식	1			
			동력	전기설비 포함	식	1			
			사무집기		식	1			
			제품		식	1			
4	고잔동	379-24	창고	컨테이너 2.45x2.45x6.0	개소	62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100번길 ***	강**	
			사무실	컨테이너 2.4x2.4x6.0	개소	1			
			사무실	컨테이너 3.0x2.4x6.0	개소	2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개소	1			
			동력		식	1			
			외등		식	1			
			철계단		식	1			
			보안시스템		식	1			
			CCTV		식	1			
			우수관	600 ϕ	식	1			
			출입문1		식	1			
			출입문2		식	1			
			사무집기		식	1			

제1734호

남동구 구보

2022. 12. 22. 목요일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포장		식	1			
5	고잔동	372-7	출입문	EGI웬스 B=5.0 H=2.0	m ²	10	인천시 연수구 선학로 ***	신**	
			웬스	EGI웬스 B=30.0 H=3.0	m ²	90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159-2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159-2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9-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159-2번지 일원 소로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152m, B=10m, A=1,653.7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당초: 남동구청장(건설과)
- 변경: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5.28. ~ 2022.12.31.

○ 변경: 2020.05.28.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소로1-5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계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권 계 자			비 고
					도로내	도로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159-2	도	3,271	506		506	2,765	남동구	-				
2	고잔동	184-1	전	4	4		4	0	김○○ 외 3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7 서초4차우성아파트 ○○○				
3	고잔동	184	잡	2,651		1	1	2,650	김○○ 외 4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7 서초4차우성아파트 ○○○				
4	고잔동	162-8	잡	641		3	3	638	장○○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59-1 서초4차우성아파트 ○○○				
5	고잔동	162-2	장	474		23	23	452	장○○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59-1 서초4차우성아파트 ○○○				
6	고잔동	163-7	장	513		12	12	501	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7-12 북아현아파트 ○○○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연수지점)	근저당권	
7	고잔동	163-19	답	352	352		352	0	○○기업 (주) 외 2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연수지점)	근저당권	
8	고잔동	163-20	장	535		4	4	531	○○기업 (주)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9	고잔동	162-3	전	1,243	186	24	210	1,033	서○○	용인시 죽전동 1116 죽전마을 현대홈타운4차 ○○○	남동○○ 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저당권	
10	고잔동	182-28	도	113	113		113	0	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563-2 동 보아파트 ○○○				
11	고잔동	182-21	장	659		3	3	656	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7 ○○○ (보정동,○○○)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2가,연수지점)	근저당권	
12	고잔동	174-4	도	2,844	424		424	2,421	남동구	-				
합 계				13,300	1,584	69	1,654	11,647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177-4번지 일원 소로1-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177-4번지 일원 소로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7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177-4번지 일원 소로1-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136m, B=10m, A=1,511.9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당초: 남동구청장(건설과)
- 변경: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5.28. ~ 2022.12.31.

○ 변경: 2020.05.28.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소로1-7호선)

연 번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소계 (㎡)	잔여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 고
				도로 내	도로 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174-4	도	2,844	142	142	2,702	남동구	-				
2	고잔동	179-6	장	783		26	756	진○○	경기도 부평구 마장로 121, ○○○(산곡동,현대아파트)				
3	고잔동	177-4	전	170		2	168	박○○ 외 2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11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				
4	고잔동	178-8	전	19	19	19	0	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6-1 진달래마을 ○○○				
5	고잔동	179-7	묘	392	392	392	0	진○○	경기도 부천시 산곡동 산 37-4 현대아파트 ○○○				
6	고잔동	178-2	장	1,398		17	1,381	조○○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상동,진달래마을)	○○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 (충정로1가,○○○)	근저당권	
7	고잔동	180-5	대	69	69	69	0	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 ○○○(신봉동. ○○○)				
8	고잔동	180	장	468		18	449	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 ○○○(신봉동. ○○○)				
9	고잔동	178-1	장	579		11	568	양○○ 외 1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71, ○○○ (상동,반달마을)	○○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 (회현동1가,○○○)	근저당권	
10	고잔동	178-12	전	50	50	50	0	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 ○○○ (신봉동. ○○○)				
11	고잔동	204-18	도	38		0	38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36, ○○○(상동,꿈동산)	○○은행	서울시 중구남대문로○○○ (을지로2가,학익동지점)	근저당권	

12	고잔동	586-63	도	3,145	42	14	56	3,089	국(국토 교통부)	-				
13	고잔동	204-11	장	2,035	282	30	313	1,722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36, ○○○(상동,꿈동산)	○○은행	서울시 중구남대문로○○○ (을지로2가,학익동지점)	근저당권	
14	고잔동	204-10	장	867	75	6	81	787	(주)○○ 에프디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고잔동)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남동공단지점)	근저당권	
15	고잔동	204-12	전	60	60		60	0	박○○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35 ○○○ (송도동, ○○○)				
16	고잔동	203-6	대	59	59		59	0	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17	고잔동	203-4	대	121		13	13	108	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18	고잔동	203-5	대	167	167		167	0	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39, ○○○(가경동, ○○○)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광명사거리지점)	근저당권	
19	고잔동	203-2	대	192		18	18	175	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39, ○○○(가경동, ○○○)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 (광명사거리지점)	근저당권	
합 계				13,455	1,358	154	1,512	11,943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522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522번지 일원 소로1-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522번지 일원 소로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170.0m, B=10.0m, A=1,895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당초: 남동구청장(건설과)
- 변경: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5.28. ~ 2022.12.31.

○ 변경: 2020.05.28.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권 계 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519-26	임	30	1	29	(주)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				
2	고잔동	519-29	임	447	370	77	(주)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				
3	고잔동	586-28	도	1,957	159	1,798	국(국토교통부)	-				
4	고잔동	521-1	전	361	64	297	(주)생*****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				
5	고잔동	522	답	1,488	396	1,092	유**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	유***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 ***	전세권	
6	고잔동	525-3	답	484	484	0	김** 외 1인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	근저당권	
7	고잔동	524-12	답	399	399	0	박** 외 5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				
8	고잔동	525-2	답	7	7	0	김** 외 1인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				
9	고잔동	531-2	답	19	15	4	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				
합 계				5,192	1,895	3,297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53호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2(2005.01.11)호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0(2009.12.21.)호로 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 고시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3-67(2013.7.29.)호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51(2018.04.20.)호로 고시된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일원 11필지(만수동72-46번지 외 10필지)
 - 나. 면 적 : 7,227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선화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9, 2층 (만수동,만수쇼핑)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변경있음)

- 시행기간 : (기정)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2. 11. 28

(변경)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6. 03. 28

5.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7월 29일(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사 업 명	대지면적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	7,227.0㎡	근린 및 판매시설	69.53%	381.8%	41.7m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	-	임대 (-세대)
-㎡	-	분양 (-세대)
-계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정 비 기 반 시 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 로	-	도 로	-	만수종합쇼핑 재건축정비사업조 합	해당사항 없음
	공 원	-	주 차 장	-		
	합 계	-	합 계	-		

10. 기타 관계도서 : 게재 생략 【남동구청 생활경제과(☎453-2662)에 비치함】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50m, B=6m, A=442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당초: 남동구청장(건설과)
- 변경: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7.16. ~ 2022.12.31.
- 변경: 2020.07.16.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소재지: 남동구 장수동

연번 구분	동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1	장수동	381-3	도	3,390	52	인천광역시				
2	장수동	751-21	도	59	15	국유지	건설교통부			
3	장수동	394-1	도	737	29	인천광역시				
4	장수동	390-4	대	23	23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 (장수동)			
5	장수동	394-7	잡	39	39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6	장수동	751-20	도	98	92	국유지	건설교통부			
7	장수동	393-2	대	55	55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8	장수동	393-3	대	53	53	원○○	인천광역시 수현로 ○○○(장수동)			
9	장수동	391-5	도	12	12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35-3 32블록 `4 롯데 벽산블루밍아파트 ○○○			
10	장수동	392-2	전	55	55	오○○	부천시 남구 상동 ○○○			
11	장수동	391-11	대	8	8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장수동	368-9	도	1,233	9	남동구				
계				5,762	442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94-1	NO. 0+5.0	R	8920D631수현지38L5	한국전력	
2	장수동	391-11	NO. 3+1.0	R	8920D645수현지38L4R2L2L1	한국전력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94-1	NO. 0+5.0	R	C-151001-1025	kt	
2	장수동	393-3	NO. 2+10.0	R		kt	
3	장수동	751-20	NO. 2+10.0	L	만수6전주번호15-3	kt	
4	장수동	391-11	NO. 3+1.0	L		kt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종로3-6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종로3-6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2,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2.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29-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운연동 종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L=900m, B=12m, A=19,117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당초: 남동구청장(건설과)
- 변경: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05.28. ~ 2022.12.31.
- 변경: 2020.05.28. ~ 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토 지 조 서(중로3-69호선)

일련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도로내	도로외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1	운연동	229-10	답	758	56		56	한국○○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정자동)			
2	운연동	229-8	전	451	133	38	171	한국○○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정자동)			
3	운연동	229-11	전	49	8	5	13	이○○	만수서로37번길○○○(만수동)			
4	운연동	229-4	전	1,083	147	150	297	이○○	만수서로37번길○○○(만수동)			
5	운연동	228-5	전	970	299	134	433	백○○	서창동 ○○○			
								이○○	인천 남동구 ○○○			
6	운연동	228-10	전	624		61	61	민○○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102번길○○○ (소사본동,청구아파트)			
7	운연동	228-4	전	226	149	39	188	이○○	연수 켄벤티아대로60,○○○ (송도동,송도푸르지오월도마크2단지)			
8	운연동	227-4	전	2,982	631	419	1,050	서○○	남동구 소래로677,○○○ (만수동,삼화아파트)			
								서○○	남구 인주대로418번길19○○○ (주안동,광명아파트)			
								서○○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27-8,○○○ (정왕동,시흥배곧신도시호반베르디움센트 럴파크)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59,○○○(상현동,상현마을금호베 스트빌1단지(아))			
9	운연동	226	전	1,081	242	158	400	전○○	부평구부평동70-5동아아파트○○○			
10	운연동	225	전	446		17	17	추○○	운연동○○○			
11	운연동	226-1	과	4,097	1,015	1,729	2,744	이○○	남동구운연로○○○(운연동)	남동○○ 조합	남동구장승로○○○(만수동) 구월남지점	근저당권

12	운연동	산37-1	임	298		7	7	추○○	운연동○○○			
13	운연동	226-3	임	200		19	19	이○○	인천 간석동 ○○○			
14	운연동	산36	임	7,934		65	65	서○○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15	운연동	251-1	전	506		228	228	서○○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16	운연동	산39	임	793	185	527	712	박○○	경기도시흥시신천3길○○○(신천동)			
17	운연동	251	전	701	174	383	557	박○○	경기도시흥시신천3길○○○(신천동)			
18	운연동	250	대	1,071	398	274	672	서○○	운연동○○○			
19	운연동	249-1	대	404		63	63	이○○	남동구 운연로○○○(운연동)			
20	운연동	254-1	대	590		49	49	이○○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21	운연동	253-2	도	42		3	3	이○○	웅진군백령면장춘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구월동지점)	근저당권
22	운연동	253	대	533		50	50	이○○	웅진군백령면장춘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구월동지점)	근저당권
23	운연동	253-1	대	72	72		72	이○○	웅진군백령면장춘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구월동지점)	근저당권
24	운연동	254-4	대	213	213		213	이○○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25	운연동	255	대	433		5	5	서○○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26	운연동	255-1	대	96	96		96	서○○	경기도시흥시 수인로3395번길19-1,○○○ (신천동,신천씨티빌)			
								서○○	남구낙섬중로102,○○○ (용현동,유원용현아파트)			
27	운연동	252-4	도	1,640	12		12	남동구				
28	운연동	249-2	대	382		3	3	김○○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29	운연동	249-7	대	19	19		19	김○○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30	운연동	254-2	대	159		2	2	김○○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31	운연동	254-6	대	14	14		14	김○○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32	운연동	254-5	도	45	45		45	남동구				
33	운연동	254-3	대	149	149		149	남동구				
34	운연동	506-10	도	33	6		6	건설 교통부				
35	운연동	256-2	도	78	24		24	남동구				
36	운연동	256	대	254		21	21	황○○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37	운연동	256-1	대	98	98		98	서○○	운연동○○○			
38	운연동	283-2	대	576		31	31	이○○	남동구 만경로21-4,○○○(만수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 (을지로2가) 만수동지점	근저당권
39	운연동	283-7	대	371	371		371	이○○	남동구 만경로21-4,○○○(만수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 (을지로2가) 만수동지점	근저당권
								남동구청				
40	운연동	275	대	407	34	27	61	유○○	남동구 운연로○○○(운연동)	남동○○ 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41	운연동	506	도	4,143	208	117	325	건설 교통부				
42	운연동	274	대	506		8	8	김○○	남동구운연동○○○			
43	운연동	283-14	도	16		8	8	이○○	남동구 만경로21-4○○○(만수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 (을지로가 2) 만수동지점	근저당권
44	운연동	277	대	50	34	16	50	재무부				
45	운연동	278	대	216		54	54	박○○	남동구운연로○○○(운연동)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근저당권

										조합	○○○ (구월지점)	
46	운연동	278-1	답	287	262	25	287	유○○	남동구운연동○○○			
47	운연동	276	대	49		19	19	남동구청				
48	운연동	276-1	대	60	60		60	남동구청				
49	운연동	273	대	614	1	9	10	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목동동로430,○○○ (목동,목동신시가자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2가)문례동지점	
50	운연동	279	전	1,398	310	136	446	김○○	남동구 백범로○○○(간석동)			
51	운연동	272-1	창	700		132	132	민○○	남동구 서창남로17,○○○ (서창동,인천서창엘에이치11단지)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 (회현동1가)의왕지점	근저당권
52	운연동	272-3	답	132	132		132	민○○	남동구 서창남로17,○○○ (서창동,인천서창엘에이치11단지)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 (회현동1가)의왕지점	근저당권
53	운연동	280-4	창	1,230	225	70	295	윤○○	남동구운연동○○○			
54	운연동	510-4	구	218		7	7	농림축산 식품부				
55	운연동	510-11	구	1,267		26	26	농림축산 식품부				
56	운연동	510-7	구	674	22		22	농림축산 식품부				
57	운연동	510	구	157		2	2	농림축산 식품부				
58	운연동	510-10	구	87	87		87	농림축산 식품부				
59	운연동	316-7	도	466	25		25	남동구청				
60	운연동	323	대	1,279		24	24	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범안로 96번길 23,○○○ (범박동,부천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남시화지점	근저당권
61	운연동	323-1	도	236	236		236	남동구청				
								이○○	경기도 부천시소사고범안로96번길○○○(범박동 ,부천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남시화지점	근저당권

62	운연동	323-5	도	100	44		44	남동구청				
63	운연동	323-4	답	14		2	2	이○○	남동구 음실로○○○(운연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남시화지 점	근저당권
								남동구청				
64	운연동	324-1	대	521	236	44	280	고○○	경기도구리시장자호수길125○○○ (토평동,토평마을이편한세상)	주식회사 ○○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동2가)	근저당권
65	운연동	324-6	창	380		32	32	허○○	부산광역시 연제구황령산로503번길○○○(연산동)	주식회사 ○○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	근저당권
66	운연동	324-7	답	238	238		238	허○○	부산광역시 연제구황령산로503번길○○○(연산동)	주식회사 ○○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	근저당권
67	운연동	324-2	대	616		20	20	허○○	부산광역시 연제구황령산로503번길○○○연산동)	주식회사 ○○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	근저당권
68	운연동	325-1	답	190	169	21	190	이○○	남구성성로129번길○○○(학익동)			
69	운연동	325	대	761		40	40	이○○	남구성성로129번길○○○(학익동)			
70	운연동	325-2	도	45		5	5	이○○	남구성성로129번길○○○(학익동)			
71	운연동	507	도	3,160	161	165	326	건설교통 부				
72	운연동	326	대	764	267	87	354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마로 70.○○○ (효성동, 현대아파트)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61.○○○(산곡동,한화아파트)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연수동,유천아파트)			
73	운연동	328-3	전	346	13	37	50	정○○	남동구장자북로47,○○○(장수동,한별렉 스힐아파트)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남동중앙지점	근저당권
74	운연동	328	전	2,401	225	146	371	서○○	경기도시흥은행로○○○(은행동,시흥은 행4차푸르지오)	○○조합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대야동)	근저당권
75	운연동	337	전	2,387	634	537	1,171	이○○	경기도시흥은행로233,○○○(대야동,늘 푸른백산아파트)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76	운연동	340	전	3,094	21	108	129	이○○	경기도시흥시복지로39-10,○○○ (대야동)	○○조합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39-10,○○○(대야동)	근저당권
77	운연동	336	전	664	236	283	519	서○○	서울시관악구신림동○○○			
78	운연동	343-8	전	892	147	158	305	김○○	남동구음실서로○○○(운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79	운연동	343-7	전	1,025	412	184	596	김○○	남동구음실서로○○○(운연동)	남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80	운연동	343-6	전	892	317	224	541	추○○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안양지구 ○○조합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 ○○○ (안양동) 주사무소	근저당권
81	운연동	343-3	임	327	40	28	68	한산○○ 중중	운연동○○○			—
82	운연동	347-1	창	331		33	33	추장○○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안양지구 ○○조합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 ○○○ (안양동) 주사무소	근저당권
83	운연동	347-2	도	241		13	13	추○○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안양지구 ○○조합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 ○○○ (안양동) 주사무소	근저당권
84	운연동	347-5	전	69		20	20	강○○	경기도시흥시신천로44번길12,○○○(신 천동)	부천지구 ○○조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삼곡로 ○○○ (삼곡본동)역곡지점	근저당권
85	운연동	347	대	349		4	4	강○○	경기도시흥시신천로44번길12,○○○(신 천동)	부천지구 ○○조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삼곡로 ○○○ (삼곡본동)역곡지점	근저당권
86	운연동	347-3	전	799	739		739	추○○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안양지구 ○○조합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 (안양동) 주사무소	
87	운연동	347-4	창	505		16	16	추○○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안양지구 ○○조합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 ○○○ (안양동) 주사무소	
88	운연동	347-6	전	149		21	21	강○○	경기도시흥시신천로44번길12,○○○ (신천동)	부천지구 ○○조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삼곡로 ○○○ (삼곡본동)역곡지점	
89	운연동	355	전	377	164	56	220	김○○	남동구운연동○○○			
90	운연동	354-3	전	3,054	231	9	240	김○○	남동구운연동○○○			
91	운연동	354-2	전	5,580	397	12	409	김○○	부평구 부평동○○○			
92	운연동	344-4	도	41	23	3	26	최○○	운연동○○○			

제1734호

남동구 구보

2022. 12. 22. 목요일

93	운연동	344-6	도	10		2	2	최○○	운연동○○○			
94	운연동	344-1	대	886		7	7	최○○	운연동○○○			
95	운연동	344-7	도	12		2	2	최○○	운연동○○○			
96	운연동	354-1	전	777	311	55	366	김○○	남동구운연동○○○			
97	운연동	356-2	전	2,073	1	6	7	김○○	남동구운연동○○○			
98	운연동	356-1	전	3,299	165	122	287	김○○	남동구운연동○○○			
99	운연동	326-2	도	41		5	5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마로 70.○○○ (효성동, 현대아파트)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61.○○○(산곡동,한화아파트)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연수동,유천아파트)			
100	운연동	346-1	대	427		9	9	김○○	남동구 구월동 북개서로 ○○○			
101	운연동	346-2	도	55	55		55	김○○	남동구 구월동 북개서로 ○○○			
102	운연동	346-3	도	10		2	2	김○○	남동구 구월동 북개서로 ○○○			
합계						11,438	7,679	19,117				